

라싸 종교회의 :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들의 돈頓/정적靜寂주의 논쟁(V)*

풀 드미에빌 (Collège de France, 1894~1979)

(중국학 및 중국문학 교수)

역자_김성철 (금강대 불문연 HK교수)

배재형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차상엽 (금강대 불문연 HK교수)

과주 절도사와 티벳 유력 인사들을 위한 둔황 중국 승려들의 축원문¹⁾

첫 번째 필사본

각각의 세계에 보살을 권속²⁾으로 거느린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께 머리 숙

* 이 번역은 「라싸 종교회의: 라싸 종교회의 :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들의 돈頓/정적靜寂주의 논쟁(IV)」 (『불교학리뷰』 16(2014.12), 213-254)에 이어지는 번역이다. 이 책과 번역의 의의에 대해서는 『불교학리뷰』 9(2011.6) p.267 참조.

1) 펠리오 장서, no. 2449, 뒷면. (높이 25cm, 누런 종이의) 두루마리 앞면에는 한 권卷으로 된 도교道敎 텍스트가 있는데 그 시작이 불완전하고 제목은 元始應變歷化經이다. 뒷면에 기원문들 중 첫 번째 편린이 나오며 검은 먹으로 작성됐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편린은 붉은 먹글씨다. 네 번째 편린은 앞면의 (검은 먹으로 작성된) 마지막 행들 행간에 붉은 먹글씨로 엇갈리게 필사했다. 볼품없는 필체

2) *Parivāra*.

여 청하오니 자비로 이 세계를 굽어 살피시어 천복 가득한 빌³⁾로 대대티벳 왕국의 사주(둔황)에 왕림하여 시주 오로추Ngo-lo-ts'ou⁴⁾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시주의 작고한 부인을 추모하여 의식을 봉행코자 하옵니다. 이런 목적으로 외성外城 밖에 자리한 동산의 숲에 번幡과 개蓋로 꾸민 천막을 세웠습니다. 여기 향을 사르고 거룩한 존안 앞에서 경전을 독송합니다...⁵⁾

두 번째 필사본

청량보신⁶⁾의 문수사리와 영취산⁷⁾ 꼬대기의 석가여래와 포탈라까의 성聖 관세음보살,⁸⁾ 해주海洲의 8대 아라한들과 칠엽암굴⁹⁾의 500 성문들, 과거와 삼세의 수많은 모든 성인들께 청하오니, 금일 신임 과주절도사 론실흥결리실 거라¹⁰⁾의 봉헌물을 받으려 신족을 옮겨 이 세상 이 도량에 오소서.¹¹⁾ 그의 고

3) 福足. 본서 240, n. 1 참조.

4) 莫囉庵. *악라추Ngāk-lā-ts'uo.

5) 又更稽請過去未來見在諸佛, 各有世界所是眷屬皆是菩薩, 興運慈心, 頤降福足來於此界大蕃 國中沙州境內, 授於施主莫囉庵. 所請施設意者, 為其亡妻沒追念. 故於廓外巽擇園林, 宏敷 素幕, 張其幡蓋, 焚爇寶香, 安置尊容, 幷持經典[이하 소실됨.]…

6) 靑(淸으로 읽음)涼賣山. 중국에서는 오대산과 동일시된다.

7) 靈就(鷲로 읽음)山. *Grdhrikūta*.

8) 布特洛迦觀音聖者. *Potalaka*.

9) 七葉巖窟, *Saptaparna-guhā*. 라자그리하 인근에 위치한 동굴로, 대중부(大衆部, *Mahāsāṅghika*) 전통에 따르면 이곳에서 제1차 결집이 열렸다.

10) 瓜州新節度使論悉劣乞里悉去囉. 論은 티벳의 관직명 뿐이다. 『자치통감』, 제194권, 42a와 사마광이 『고이』에서 인용했던 『보국사』(사마광이 『고이』에서 줄기차게 인용하는 이 문헌은 742년부터 825년에 이르는 일화들의 모음집인 이조李肇의 『[당]국사보[唐]國史補』와 전혀 달랐던 것 같다. 『[당]국사보』에 대해서는 Chavannes-Pelliot, J. As., 1913, I, 229와 R. des Rotours, *Traité des Examens*, 107을 보라. 적어도 나는 이 일화 모음집의 현존하는 에디션들에서 사마광이 『보국사』의 발췌문들인 양 인용했던 구절들, 일화의 특징이라곤 전혀 없는 그 구절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한유림韓儒林이 *Studia Serica*, I, 113에서 말하듯 『당서』, 제58권(志第48 藝文2), 4b의 서지목록이 언급하는 것은 [당나라 말末] 임은林恩의 『보국사』에 관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 점에 대해 M. H. G. Pulleyblank는 『고이』와 당나라

백을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소서.¹²⁾ 의식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법당의 장엄, 현화, 둥동 울리는 법고 소리, 승려들의 어두운 승복과 사모紗帽들, 경문과 게偈를 읊는 소리,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들, 불 밝힌 등, 공양간에서의 음식 장만, “회합”에 참가하는 “천 명의 승려들”. 절도사¹³⁾는 손에 향로를 들어

정사正史 사료들에 대한 그의 아주 유용한 연구에서 유감이지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B. S. O. A. S., XIII, 1950, 448~473)에 따르면 티벳의 관습은 누군가를 부를 때 본래의 성姓으로 가 아니라 왕의 씨족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저 論論=뢴Blon으로, 공무公務를 맡는 씨족(실제로 오직 모계를 통해서만 왕의 씨족과 인척 관계를 맺었던, 고위 관리직을 담당한 씨족. 본서, 26 참조.)에 속한 사람이라면 상尙=샹Žai로 칭하는 것이었다. 論은 8세기에 論弓仁이나 論惟貞, 그 손자 論惟明 등처럼 장수로서 중국에 봉사한 여러 티벳인들에게 의해 중국 성姓으로 채택됐었다. 시인 장설張說이 쓴 그의 묘비에 따르면 論弓仁은 티벳 왕가 출신이었다.(한유림, *Studia Serica*, I, 115 [본서 보유편, 380 참조])

乞里는 티Khri다. 두 번 되풀이 된 悉은 같은 필사본 내에서 더 뒤로 가면 색 또는 새塞로 바뀐다. 悉은 일반적으로 자음 앞에 붙는 티벳어 s-를 옮겨 적는 데 쓰인다. 세 번째 글자인 究는 明明나라 말미의 사전『자휘字彙』에 따르면 弘의 속자로 불교 경전 고본古本들 속에 보인다고 한다. (『자휘』의 풀이가 분명하지 않다. 究, 舊藏作弘)

그러니까 論悉究乞里悉去囉는 勤熒티다Blon Skoń-khri-sgra 정도에 대응한다. 하지만 두 번째 음절은 매우 불확실하다.

티벳인들에게 “절도사”란 직함을 붙인 예는 둔황 문헌들과 당대唐代의 다른 티벳 관련 한문 문헌들에 꽤 빈번하게 보인다.(본서, 264, n. 2) 절도사들이란 보통 道라는 용어로 지칭된 권역을 관할하는 자들이고 중국에서 道는 적어도 8세기 후반부터 중국인 절도사의 관할 구역을 가리키는 데 쓰였다. 이를 티벳인 절도사들은 아마 토마스Thomas가 J. R. A. S., 1934, 94 이하에서 말한 뚩뚱stori-dpon들일 것이다. 839년 비문(『사주문록』, 라진옥 편집본, 9 a~b. 본서, 275, n. 1 참조.)의 음가정陰嘉政의 아우 음가진陰嘉珍은 “과주의(티벳) 절도와 사주의 부락 세 곳의 (티벳) 절도의 행군”을 위한 “곳간과 회계 장부를 맡았던”(大蕃瓜州節度行軍并沙州三部落倉曹及支計等使) 것으로 보인다. 이 중국인 하급 관리의 주업무는 세금을 걷는 일이었던 것 같다. 펠리오 장서 3770번 필사본의 5번 단편은 論頗熱渴支라 불린 티벳인 과주의 절도사를 위해 봉행된 불교의식을 다룬다.(본서, 281, n. 5)

11) 運其神足來於此方, … 來赴道場. (분명 부지불식중 쓴 말이겠지만) 神足이란 말에 언어적 유희가 있다. 神足은 본래 “신의 발”을 뜻하지만 *rddhipāda*, 즉 “신통(력)의 밑바탕”의 번역 어로 쓰이기도 한다.

12) 及受發露允其所願.

향공양을 올리고 절하기에 여념이 없다.¹⁴⁾

이어 절도사의 경건한 보시를 칭송한다. 그는 종교 의식들을 시설하기 위해 녹봉 일부를 승가에 내놓고, 삼보에 보시하기 위해 가산을 포기한다.¹⁵⁾ 그는 선조들의 행복을 바라고 위령공 상걸리심아¹⁶⁾의 장수와 관운官運형통과 부귀영화 등을 기원한다. 두 나라에서 높이 추앙받는¹⁷⁾ 상걸리심아에 대한 찬사들이 이어진다. 그의 공명정대한 국정 운영, 그의 능력과 덕망, 재능이 뛰어난 그 아들(들)과 수려한 미모의 딸(들). 십이신장들께서 그를 은밀히 도우시고 사대천왕들께서 그를 항상 보호하시길!

이런 기원들에 이어 과주 절도사¹⁸⁾의 참회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13) 여기서는 我節度論乞里塞去囉.

14) 仰捧金爐, 俯列玉跪.

15) 檄諸祿而建清董, 捨家財而饋三寶. 禡는 “쌓다, 돈을 모으다”란 의미인 저儲의 속자일 것이다. 清董은 자주 등장하는 모호한 용어로(董은 樟, “기, 깃대”, *dhvaja*의 오자 아닐까?), 불교 의례들을 가리킨다. 饋(또는 嘴 등)은 達饋의 줄임말로 *dakṣīṇā*를 옮긴 것이며 재가 선자들이 특히 의식의 비용을 대기 위해 불교 승단에 행한 보시 혹은 중여라고들 한다.

16) 爲令公上乞里心兒. Žāñ Khri-sum-rje. 이 인물에 대해선 본서 281 이하를 참조. 바로 둔황을 점령했고 둔황 최초의 티벳인 통치자였던 이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두 번째 필사본은 단밖에 보아도 둔황 정복 이후에 작성된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 티唆제는 둔황에서 령공令公이란 직위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직위는 중국에서 제국의 최고위 관리들 중 하나인 중서령中書令의 존호로, 국무대신들의 회의를 주재했던 일종의 수상직(宰相)이다. 당나라 역사서들(『구』, 제196권하, 10a. 베셀 번역, 514, 『당』, 제216권하, 5b)은 819년에 상 티唆제에게 티벳의 중서령이란 직함을 부여한다. (811년, 『백씨장경집』, 제39권, 29a. 812년, 『책부원귀』, 제980권, 15b. 821년, 『구』, 제196권하, 11a. 베셀 번역, 518 등) 다른 문헌에서 그는 재상으로도 불린다. 펠리오 장서 2765번 필사본에서는 그에게 상서령尙書令이란 직함을 붙인다. 중국에서 이 직함은 중서령만큼 그 품계가 높았다. 그러나 당나라는 627년부터 상서령을 공식적으로 없앴다.(R. des Rotours, *Traité des Examens*, 6) 822년 조약에 대한 어느 티벳 문서를 보면 상 티唆제는 훈첸뽀blon-čhen-po, “대상大相”이란 직함을 갖고 있다.(Thomas, J. R. A. S., 1928, 78 이하와 98. 본서, 247, n. 4)

17) 兩邦尊貴. 티벳과 중국?

18) 여기서는 我節度論悉夠乞里塞乞囉로 나온다.

전문前文이 온다. 이 인물은 그 용맹으로 칭송받는 전사戰士이고 전쟁 영웅이다. “그는 강철 같은 다리를 가진 말에 뛰어올라 국경을 누빈다. 그는 날쌘 활시위를 당겨 도적을 잡는다. 북쪽에서는 투르크 기병들을 으깨고 서쪽에서는 호군胡軍을 무찌른다. 그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자기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다.”¹⁹⁾ 티벳 왕이 그를 발탁했다. 왕은 몇 번이나 거듭하여 그의 공로와 재주를 알아보았다. 그는 큰 복과 명성을 누렸고 제후와 자신의 반열에 올랐다.²⁰⁾ 궁궐에서 검을 세워 왕의 거처를 지키고 국경의 관문에서 군기를 휘둘러 군사를 지휘한다.²¹⁾ 오래도록 군사 원정을 준비하는 내내 사막의 모래로 몸을 씻는다.²²⁾ 핏빛 전투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적의 목을 베고 마을을 유린한다. 승원*sanghārama*들이 파괴되고 불경佛經과 불상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며 삼보의 소유물과 승가의 재산이 거덜 난다. 전법²³⁾이 가로막히고 승가 공동체가 와해된다. 승가 소유의 토지와

19) 躍鐵馬侵而彊[而侵彊으로 읽음], 控校弦而作冠[寇로 읽음]. 北摧突伎[騎로 읽음], 西破胡軍. 竭命輸忠, 輕身爲國. 모호한 표현인 校弦의 校(상성上聲)는 “(목을) 비틀다, 새끼줄을 꼬다”의 紂일 수 있고, 혹은 “빠른, 날렵한”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도둑, 악탈자를 잡는다.”는 뜻의 作寇은 “(활쏘기라면) 그가 제일이다.”를 의미할 수 있는 作冠보다 “국경을 누빈다.”는 문구에 더 잘 부합한다. 突騎는 단순히 “맹렬한 기마병”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胡와의 상관성을 고려하면 突을 돌궐突厥, 즉 투르크족의 축약어로 해석하는 쪽이 나은 것 같다. 게다가 여기서 이 명사들은 문학적 표현일 뿐이니 말이다.

20) 賛普有分憂之念, 屢仰功才, 名標祿籍, 位轉封侯. �禄籍은 『서경書經』의 주해(Legge 번역, 62의 주)에서 뽑아온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하늘[즉 천자]이 준 “녹봉”에 합당하게 처신할 것을 대우大禹에게 당부하는 대목에 있다.

21) 穎軒金墀, 揮旌玉塞. 金墀란 황궁의 대문에서 편전까지 이어졌던 출입로를 가리키는 말인 丹墀일 것이다. 넓은 의미로 황궁 그 자체를 가리기기도 했다. 玉塞란 중국과 서역의 경계가 됐던 옥[문]관玉[門]關일 것이다. (이 필사본이 작성된 시대에 그 경계는 과주 부근이었다. 본서, 269, n. 1 참조.) 이 장황한 글월은 과주의 티벳인 절도사가 티벳 궁정에서는 물론 티벳과 중국의 국경에서도 군사적인 면에서 독보적 입지를 누렸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22) 久預軍戎, 淹停沙漠.

23) 轉法輪. *dharma-cakra-pravartana*, 불교의 홍포.

기물²⁴⁾을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는다. 선량한 사람들이 모욕과 망신을 당하며 주민들은 몽둥이와 채찍에 무릎을 꿇는다. 그야말로 불화와 독단, 오만과 멸시,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격앙된 정념들이 난무해 그칠 줄 모른다. 일말의 죄 의식도 없이 십악業十惡業과 오대죄五大罪가 밤낮으로 저질러지니, 그럴수록 미망은 깊어진다. 동료를 대접하기 위해 산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가죽과 고기를 얻고자 사냥한다. 사냥에 대한 묘사도 있다. 사냥개와 매들, 활쏘기. 현세의 삶에서, 또는 여러 전생에서 그 스스로 범했거나 타인에게 범하도록 했거나 또는 타인이 범하는 것을 보았거나 죄를 도모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를 승인했던 죄들이 이와 같다. 지금의 참회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연이은 죄업들은 영영 끊어지고 그는 목숨이 다 할 때까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리. 이와 같은 참회로 소멸되지 않을 죄업이란 없다...²⁵⁾

세 번째 필사본

두 번째 필사본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참회가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이번에는 시주의 과주 절도사 임명에 즈음하여 이를 축하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된 스승이신 석가와 문수사리, 오백 성문과 8대 아라한 등을 향한 권청(위와 같다). 금일 과주 절도사(이름과 직함은 두 번째 필사본에 나온 것과 같다.²⁶⁾)의 봉헌물을 받으려 이 도량에 강림해 주시옵소서. 보시로 이 “모임會”을 연 그는 먼저 티벳의 신성한 왕에게 그 복이 돌아가길 바란다. 이로 말미암아 왕이 장수하고 그 선조들에게 평안이 있기를!²⁷⁾ 이어 그는 령공

24) 僧常住物.

25) 如等業无量无邊…], 或於此世, 或是多生, 自作教人, 見聞隨喜, 一懺以後, 永斷相續, 盡未來際, 更不敢告[造로 읽음]之. 如等懺悔, 无罪不除, 等等.

26) 瓜州節度上論悉杓乞利塞去囉.

27) 國祖報安. 말 그대로는 “나라의 선조들이 (이 의식에서 비롯될 공덕*punya*에 힘입어 행복의 과보인) 평안을 누리길.” 이상한 문구다. 어쩌면 報恩(“[의식으로 말미암은] 그 이익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길”)으로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다.

令公의 장수와 행복 등을 소망한다. 그 다음에야 시주는 자신의 개인적 소망을 밝힌다. 의식에 관한 묘사는 두 번째 필사본보다 좀 더 소상하다. 어쨌거나 우리의 절도사 론실홍걸[리실거리]28)는 혁혁한 전공戰功의 소유자다. 그는 예리한 칼을 옆에 차고 관록을 쌓기 시작했다.²⁹⁾ 강철 같은 다리를 가진 말에 뛰어올라 운운하는 두 번째 필사본과 같은 찬사. 그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는 지방 제후와 자신의 등급에 봉해졌고 명예로운 이름을 녹적祿籍에 올렸다.³⁰⁾ 령공께서 우의友誼로써 그를 대하고 왕께서 그를 높이 평가 한다.³¹⁾ 그는 제수 받은 절도사 직職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고 있다.³²⁾ 유사流沙³³⁾의 승려와 재가신도들은 그가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백성들과 유목 부족들은 그의 자질을 만방에 알려 왕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새 교지가 내려져 그는 새 임무를 떠고 과주로 부임하니 온 마을이 기뻐하고 감사한다.³⁴⁾ 그의 관대함에 대한 칭송. 그는 청정한 마음을 가졌고 눈곱만큼도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그는 불교 의식을 시설하기 위해 자신의 녹봉을 우리에게 넘기고 초세간적 공덕을 위해 재물을 내놓는다....

28) 我節度上論悉究云云.

29) 勝劍馳名, 跨鎧[?]入土. 과跨는 칼을 차고 [밀 등에] “올라탄” 것이라 한다. 본서, 245, n. 2 참조.

30) 無願不成, 位至邦侯, 名標祿籍. 본서, 242, n. 4 참조.

31) 令公慰之如腹心, 主上惜之如耳目. 글자 그대로 읽자면 이렇다. “령공께서는 … 마치 (그가) 자신의 배와 심장인 양 그(의 노력)을 위로하고, 왕께서는 그를 자신의 귀와 눈인 양 애지중지한다.” 관용적 표현.

32) 國家社稷, 必價賢良. 受以節權, 請當雄任.

33) 流沙.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북서부 모래사막 지역을 말한다.

34) 流沙僧俗, 敢[惑으로 읽어야 할까?]荷殊恩. 百姓得入[人으로 읽어야 할까?], 行人(?部落, 標其藉信, 皆因為申贊普. 所以輪[輪으로 읽음]旨垂邊, 合城仰賞其功, 長幼深心頂謁謝. 近聞遷職, 欣喜不勝, 등등.

네 번째 필사본

앞의 필사본들과 비슷한 문안이지만 참회문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 영취산 꼭대기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와 청량보산의 문수사리, 칠엽암굴에서 결집을 행한 성도들과 해주海洲의 8대 아라한들, 사대천왕과 포탈라까의 관세음보살,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온 우주들의 모든 성자들 등등에게 청하오니, 금일 우리의 절도사 론실홍걸리실거리³⁵⁾의 봉헌물을 받으시고 그의 참회를 들으려³⁶⁾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의 절도사 론실홍걸리실거리³⁷⁾는 예리한 칼을 옆에 차고 관록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무장武將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³⁸⁾ 말에 뛰어올라 운운.(앞의 필사본과 같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묘사는 두 번째 필사본에서보다 좀 더 소상하며, 향연을 위해 죽이고 사냥길에 죽인 축생들에 관한 구절 중에는 특히 토속 신앙과 관련 있는 게 분명한 보기 드문 원망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다. “호의와 복을 얻고자 축생을 죽여 정령들에게 바친다.”³⁹⁾ 이 이기적 욕망의 방일에 희생된 모든 축생들은 오늘 이 의식이 봉행되는 사원으로 어서 올 일이다. 이 사원에서 그 희생물들은 구원을 찾으리라. 의식의 시주인 절도사는 희생물들이 단 한 마리도 지옥에서 신음하는 일 없이 이 날을 기해 정토에 태어나도록 그들 모두의 환희를 기원한다.⁴⁰⁾

35) 我節上.

36) 幷受懺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용서를 구하고(懺, 산스크리트어로 *kṣam* °) 뉘우치다(悔.)”란 뜻이다. 엄밀한 전문 용어로는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āpatti-pratidesanā*에 상당한다.

37) 我節度論悉劣乞里悉去囉.

38) 跨鋒入仕, 勝劍馳名.

39) ○祠鬼神, 乞其恩福.

40) 自悅己情, 令他受苦, 如斯類速赴道場, 幸領津糧. 各願歡喜, 莫爲泉下之啼, 即日便生淨土. 津糧(“얕은 강물을 위한 비축 식량”)은 津梁(“얕은 강물을 건너기 위한 나루 혹은 다리”)의 오기誤記다. 이것은 “강의 건너편 기슭”(彼岸, *pāra*)에 냇기 위한, 불교가 제공하는 구원의 이미지다. 불교 문헌에서 흔히 보이는 이미지로, 예를 들면 *Mahāprajñāpāramitā-sāstra*의 한역 문헌 『대지도론』(『대정신수대장경』, no. 1509, 제11권)에서처럼 열반에 적용됐거나,

절도사로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모든 죄업을 생각하다 근심에 빠졌다. 이생에서나 거듭된 전생에서나 변뇌가 그의 마음을 덮었고 무명이 그에게 두터운 장애였다. 못된 이들과 어울리며 삿된 생각들을 품었고 삼승을 비방했으며 도덕적 인과율을 부정했다. 그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전법을 막았다. 삼독심三毒心에 사로잡혀 불식不食을 어기고 행위와 말과 뜻으로 불교 계율의 금지 사항들을 범하기도 했다. 그는 부처님을 버렸고 승가를 버렸고 마차를 내달려 사원 안으로까지 난입했다. 그가 범했거나 남에게 시켰거나 남이 범하는 것을 보거나 죄를 모의하는 것을 듣고서도 묵인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모든 죄를 그가 오늘 고백하니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가피를 구하고 모든 죄업이 소멸하길 기원한다.⁴¹⁾ 다른 사본들에서처럼 절도사의 후한 보시에 대한 찬사, 그 다음 의식에 대한 묘사, 끝으로 시주의 소원들이 이어진다. 시주는 이 보시로 얻은 공덕들이 맨 먼저 성신聖神이신 찬보를, 다음으로 봉의령공奉益令公이신 상결심이⁴²⁾를, 그리고 나서야 절도사인 그 자신, 론실흥걸리실거라를 “장엄”하길 바란다. 그는 천신들의 보호와 봇다의 가피가 깃들기를 호소한다. 뜻한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그의 앞길이 항상 빛나길! 그 선조와 후손들에게 풍요와 가호가 있기를! 셀 수 없이 많은 우주와 지옥계의 온 중생들이 봇다와 천신들의 가피로 구제되고 현세의 해어 나올 길 없는 밀림 숲⁴³⁾을 벗어나 그와 함께

『대정신수대장경』, no. 2109, I, 842b에서처럼 보시를 통해 사망한 조상들에게 얻게 해준 “구도救度”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다. 앞의 다른 필사본 조각들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구절 전체는 참혹한 전쟁의 희생자들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41) 又恐今世及以前身, 煩煩[惱로 읽음]覆心, 无明障厚, 邇惡知識, 起邪見心, 悔[毀로 읽음]誘三乘, 摳無因果, 壞和合衆, 障轉法輪. 起貪嗔[瞋으로 읽음]癡, 動身口竟[意로 읽음]破齋破戒, 拾捨拾僧. 策馬乘車, 排突寺舍. 如斯等業, 无○[量으로 읽음]無邊, 自作教他, 見聞隨喜, 今日發路[露로 읽음], 不敢覆藏. 普申懺謝, 願皆消滅.

42) 여기서는 尚乞心兒.

43) 조림惆林, *gahana*.

피안에 도달하기를!⁴⁴⁾

전쟁에서의 잔혹행위를 고백하고 경건한 보시와 봉헌물로 속죄하려는 이 장수의 참회하는 태도는 물론 불교에서 조금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극동 지역에 국한시켜 보면, 티벳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킨 822년 조약을 기린 한 사원 건립 때의 정형화된 발원문들 중에서, 전적으로 티벳의 것이긴 하지만 방금 분석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문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⁴⁵⁾ 그 문서들에도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저지른 살생이나 약탈에 대해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티벳의 왕과 참모들, 대신들, 참전했던 성시城市들(꼭 집어 말하면 과주가 그런 성시들 중 하나다.)이 나온다. 사원 건립으로 공덕을 얻으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목표다.

… 예전에 중국과 드루그Drug 인들⁴⁶⁾이 티벳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을 적에

44) 以斯景業, 先用莊嚴聖神贊普. [...]復持是善, 奉益令公尙乞心兒. [...]復持是善, 莊嚴節度上論悉尙乞里塞乞羅. 天縱籌畧, 神假美謀. 祿位彌高, 榮名轉盛. 珠輪紫蓋, 日夜滿家. 百寶七珍, 來於境內. 六親祭々, 九族誄々. 男標忠孝之名, 女茂謙貞之節. 然後善神擁街[衛豆 읽음.], 諸佛威加. 祥瑞來臻, 善身[神으로 읽음.]競集. 傍周[闢의 대체자]沙界, 極賴鐵國, 並出稠林, 俱超彼岸. 黃은색 먹으로 쓴 글은 여기서 끝난다.

45) F. W. Thomas, *J. R. A. S.*, 1928, 77 이하. 발원문들을 보면 이 사원의 위치는 “청록 숲의 화진을 맷은] 평원”(gyu-chal mjal-tum thari-tu) 위라고 되어 있다. 토마스는 이곳이 칭해호 지역 내 중국 국경 근처의 모처某處라고 보았다.(같은 곳, 84) 그러나 이 지역에서 “783년 조약과 821~822년의 조약 둘 모두가 체결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토마스의 말과 달리, 중국 측의 아주 정밀한 정보들에 의하면 821~822년 조약은 처음에 장안에서, 뒤이어 라싸 바로 옆에서 맺어졌다.(202, 229, 282 참조.) 토마스의 자료가 (장안 서쪽, 지금의 감숙성 내 청수에서 체결된) 783년 조약이 아니라 822년 조약에 딱 들어맞는 이유는, 두 개 언어로 새겨진 822년의 비문 속에서 발견되는 인물의 이름들(티죽데젠, 상 티唆제)과 삼보에 대한 기원이 다시 나오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이 사원이 서약식을 행했던 곳과 같은 곳이라고 보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본서 362~364 참조.]

46) 드루그인들은 토목흔吐谷渾인들이거나 투르크인들, 특히 위구르인들인 것으로 보인다. 야

단단한 투구를 쓴 왕자⁴⁷⁾와 현명하고 용감한 참모들이 작열하는 전투 기량으로 적을 쳐부수고 대군大軍의 막강한 힘으로 적의 성시들을 굴복시키며 전투에서 이기고 적국을 정복하며 백성을 도륙했던 등등의 사실이 있으니, 수많은 사람과 소들의 숨을 끊어놓은 죄와 남의 것을 취한 죄가 이 크나큰 공덕의 힘과 장엄으로 완전히 제압되고 녹아 씻겨 내려가기를! 삼보에 예경하는 이 희사喜捨의 공덕과 여러 죄업을 고한 공덕으로 깨달음과 용서와 면죄를 구하는 고해자의 간청이 말 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이다.

티벳의 대상大相, 단단한 투구를 쓴 위대한 감켈Sgam-dkyel⁴⁸⁾…, 단단한 투구를 쓴 각하 생전에 그의 귀한 참모들의 영웅적인 힘으로 적敵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명을 내릴 생각이었다. …를 기리고자 사월 하나를 건립하면서, 진정한 의로움이 마음에서 우러나 이 뜻을 꺾고 덮었다. 티쪽데챈 왕자가 의중에 둔 뜻이 이루어졌기를. 대상이자 삼촌인 티啐제⁴⁹⁾와 종조부 하상Lha-bzañ⁵⁰⁾이 적대적 중국인들과 드루그인들을 패퇴시키면서 크고 작은 다른 수단들로 적에게 해를 입혔고, 완강하고 용맹한 티벳인들을 두둔한 과주 성시의 일부 주민들 편에서 … 기꺼이 적에게 위해를 가했을 수 있거니와, 이 모두가 남김없이 치유되기를! 위대한 성시 과주가 이 기도로 보시를 했으니…

마모토T. Yamamoto의 선택-이 중에서 더 그럴듯한 것-은 위구르인들이다. “Sur les Drug-gu (Dru-gu, Drug)”, 『東方學報』, 제26권, I, 1938년 11월, 1~43.

47) 하찌Lha-sras. 티쪽데챈이다. 같은 텍스트의 다른 곳에서는 짠뽀, 즉 왕이란 칭호를 붙인다. “단단한 투구를 쓴 왕자”라는 이 수식어구는 ‘신의 아들’devaputra 혹은 더 정확하게는 한자어 천자天子에 상당한다.

48) Bod rje-blon dbu-rmog brcan Sgam-dkyel čhen-po'i. 토마스가 지적(ibid., 84)한 것처럼, 이 인물은 822년의 비문에 감켈챈塑Sgam-bskyel čhen-po란 이름으로 거명된 자임에 틀림 없다.(Waddell, J. R. A. S., 1909, p.951, I, 44)

49) 뤼챈뽀 상 티啐제Blon-čhen-po Žań Khri-sum-rje. 중국 사료들에 나오는 상걸심이다. 787년 무렵 둔황을 정복한 다음 장군과 재상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으며 821~822년의 중국-티벳 회맹조약을 준비하고 조인했던 인물.(본서 281이하 참조.)

50) 챔뽀상하상Čhen-po Žań Lha-bzań. 본서 280, n. 5 참조.

중국에서도 당 왕조가 들어선 직후 태종 황제(이세민李世民)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였거나 왕권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죽은 약 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628년 장안의 모든 사원에서 7일간의 속죄 의례를 올리게 했다. 당시 반포된 포고령에서 그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계율인 불살생계를 어긴 것을 통렬히 뉘우친다.⁵¹⁾ 곧이어 나온 태종의 또 다른 칙령은 당唐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죽고 죽였던 전쟁터 7개소에 사원을 건립하라 명했다.⁵²⁾ 당나라를 위해 죽어간 병사들의 넋⁵³⁾뿐 아니라, 불교가 설한대로 온 중생의 “평등”을 이유로 적들의 혼 역시 위무한다는 데 이 보시의 미덕이 있다. 일본에서 겐코元弘시대(1331~1333)의 내란을 겪은 후 고다이고後醍醐황제를 내쫓고 혜이안平安에 자리 잡은 아시카가足利 막부 쇼군들이 제국의 70개 성省마다 사원과 탑stupa을 하나씩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의 논변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이 사원과 탑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살생과 악탈에 대한 참회의 표시였고 전쟁 중에 죽은 아군만큼이나 적군에게도 사후의 복을 얻어주

51) 『불조통기』, 『대정신수대장경』, No. 2035, 제39권, 363b. 『변정론辯正論』, 『대정신수대장경』, No. 2110, 제4권, 512b. 죽어 원혼이 되면 삼악취durgati로 가고 깨달음bodhi을 향하지 못하게 될 터, 당 태종은 이 속죄 의식들의 효과로 희생자들이 원혼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52) 정관貞觀 3년 윤12월(630년 1월 19일~2월 17일)의 포고령. 『불조통기』, 『대정신수대장경』, No. 2035, 제39권, 363c. 『구』, 제2권, 7b(장장 말미, 찬술자들의 주 참조). 『당회요』, 제48권, 9b-10a. 『당대조령집』, 제113권, 2b. 이 명문장의 시작은 이렇다. “완전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진실로 그 자신의 ‘나’라는 분별 일체를 모른다. 불교는 자비의 정신으로 한결같은 평등samatā 안에서 모든 차이를 가지런히 고른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는다. “짐이 시름에 잠겨 범낮을 잊었으니, 오로지 복전福田을 일구어 떠도는 저 넋들을 구제할 생각뿐이었노라. 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 아래 (다시 말해 왕조의 혁명을 시작한 아래) 서로 싸웠던 곳들에 정의의 옹호자들은 물론 흥악한 적들을 위해서도 爲義士凶徒 사찰寺刹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 사찰들이 하사받은 이름은 “당 왕조의 도래[를 기리는] 절”이란 뜻의 흥당사興唐寺였다. 흥당사에는 기념비들이 세워졌는데, 그 비문은 안사고顏師古와 허경종許敬宗 등 당대의 가장 유명한 문사들이 쓴 것이었다. 어느 쪽이 쓴 것인지는, 독자는 필시 이 비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53) 營魄. 『老子』, 제10권에서 끌어온 표현.

기 위한 것이었다.⁵⁴⁾

8세기 전반기의 전쟁들을 치르는 동안 중국에서 죽은 티벳인들까지도 현종 황제가 취한 비슷한 조치들의 덕을 입지 않은 이가 없다. 현종 자신은 불교보다 도교로 더 기울어 있었음에도 말이다. 736년 무렵 그는 티벳 병사들이 죽었던 지역의 지방 관리들에게 그 시신을 적절한 예를 갖춰 매장하라고 명했다. 그가 무고하다고 여긴 티벳의 병사들과 “하늘을 어지럽히고 신들을 분노케 한”, “정의에 등돌리고” 그에 반하는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은덕을 망각했던” 티벳의 장수들을 다르게 대했음은 사실이다. 황제는 말했다. “짐은 저 흉포한 수장들의 희생자, 그 휘하의 군졸들을 측은히 여기노라. 군졸들의 뼈가 쌓여 초원을 기름지게 하고 평원을 뒤덮었어도 땅별과 찬 이슬을 맞은 채 뒹구는 구나. 어찌 측은하지 않겠는가? 전사한 티벳인의 시신들을 찾아낸 모든 주제와

54) 1338년 무렵 아시카가 다다요시가 건립한 “나라의 안녕을 위한 사찰들”(安國寺)과 “중생들의 이익을 위한 탑”(利生塔). 츠지 젠노스케, *Études d'histoire du bouddhisme japonais* (『日本佛教史研究』), I (東京, 1919), 461 이하 및 하시가와 다다시, *Histoire synthétique du bouddhisme japonais* (『綜述日本佛教史』, 東京, 1932), 561 이하 참조. 이 건립의 진짜 목적은 정치적, 전략적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츠지 젠노스케가 인용한 한문 문헌에서 아시카가 막부의 종교 고문이자 안국사 건립 추진자인 “나라의 스승” 무소(夢窓國師)가 내세우는 종교적 구실들은 이상에서 분석한 듯한 필사본 편린들과 자구字句의 뜻에서나 그 취지에서나 놀랄 만큼 유사하다. 적군과 아군의 평등(怨親平等) - 사후死後의 평등!- 이란 원칙은 1597년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받은 전리품들을 파문었던 총塚 위에 탑塔을 세운 일을 예찬하는 데 쓰이기까지 했다. 귀무덤(耳塚)이란 이름의 그 총은 교토京都의 방광사方廣寺 앞에 아직도 보존돼 있다. (방광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위세와 일본 통일의 상징으로 -지금은 소실된- 거대 불상을 건립했던 곳이다.) 일본으로 보내기엔 몹시 난감했을 적군의 수급 전체를 자르는 대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 이 총 아래 묻었다. 이 기념물 낙성식 때 어느 고승이 낭독한 한문 문헌에 따르면, 묘墓와 탑을 세우면서 히데요시가 품었던 생각은 조선에서 죽은 적병들을 추모하고 자비와 평등의 정신으로 그들 사후의 구원을 비는 것이었다.(하시가와, 같은 책, 570) 아주 최근에도 중국에서 일본군 부대들은 죽은 적병들의 장례를 아군 사망자들과 같은 불교 장례로 치른 것(friends and foes being equally prayed for)을 자랑스러워했다.(International Buddhist Bulletin, IV, i, Tokyo, janvier 1938, 4, 13~15)

현縣에서는 그 시신의 매장을 행할 것을 명하노라. 죽은 자들에 대한 짐의 연민이 중국인과 야만인을 가리지 않음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니라.”⁵⁵⁾

둔황의 발원문들에서 특별한 것은 전쟁 책임의 면죄를 위한 그 발원들이 다름 아닌 전쟁의 희생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과연 티벳인 지배자들이 속죄 의례의 집전을 요청했을 만큼 중국인 사문들이 아주 순종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해도, 이들의 복종이 대개 영락없는 겉사납일 뿐이고 영리한 사문들일 수록 부처님 면전에서 티벳인 주인들을 욕보이며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는 데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찍이 사변Chavannes은 둔황의 승통僧統으로 둔황 탈환 직후 중국 궁정에 밀사들을 보냈던 홍변洪贊⁵⁶⁾을 언급하며, 중국

55) 현종의 포고령. 『전당문』, 제26권, 14a. 현종이 비난했던 티벳의 장수들은 “결역서와 그 외 다른 자들”(乞力徐等)이다. 결역서(티-수?Khri-gzu?)는 개원開元 년간(713~741)의 장군이었다. 『책』, 제981권, 7a~8b 참조. 그는 736년 청해호 기슭에서 당의 군대에 패했다.(『구』, 제196권상, 7b. 베셀 번역, 470)

56) 賢은 辭의 속자(“솜씨 좋은, 능숙한”)을 뜻하는 巧와 “말”을 뜻하는 言 = 辭, “논변, 변론, 응변”이고, 이제자로는 話, 話, 話, 話가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康熙字典』 해당 항목들의 인용들. 희린希麟, 『續一切經音義』, 『대정신수대장경』, no. 2129, 제1권, 934c. 『隋書』, 제58권, 4a. 『北史』, 제83권, 10a(顧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이란 뜻. 한 인물의 인명이다.).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한 둔황 필사본(Stein, 779)에 따르면 홍변은 티벳 접령기에 “티벳에 불법을 가르치는 사주의 스승”(大蕃沙州釋門敎法和尚洪贊)이란 직함을 갖고 있었다. 둔황 탈환 뒤인 851년의 한문으로 작성된 포고령에는 그의 직함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서 불교 승가의 총괄자 겸 사주 승정이자 법과 율의 스승, 삼학의 교사.”(釋門河西都僧統攝沙州僧政法律三學敎主) 본서 237, n. 4 참조. 슈타인 필사본 779번을 보면 한 텍스트 말미에 홍변의 이름이 등장하는 간기가 있다. 이 텍스트는 『金光明經』*Suvarṇa-prabhāsa*에 의거한 것으로, 사주에 바이슈라와나(Vaiśravaṇa).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북방을 관장하는 신이자 전쟁의 수호신. 『법보의립』, 79~83 참조)의 가호가 내리기를 기원한다. 이 텍스트와, 텍스트 말미에 이어지는 간기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인다. 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洪贊修功德, 大蕃國子監博士竇良驥.” 티벳 접령기인 776년 무렵 오吳 승통(본서 34)에 대한 찬문을 썼던 이가 바로 두량기다. 두씨 가문은 둔황(과 사주?)에서 전적典籍들, 특히 불교 전적들의 필사를 전담했었다.(본서 286, n. 3과 292, n. 3 참조) 일부기 요시데루矢吹慶輝는 『鳴沙餘韻解說』, 도판 81, 3에서 이 슈타인 필사본 779를 전재하고 (제1권, 221~223에서) 해설했다. 그리 정밀하지 못한 판독임에도(두賓자 자체도 오독함) 『대정신수대장경』,

승려들이 “850년 중국의 사주 수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추이에서 주역을 담당”⁵⁷⁾ 했었다는 데 주목했다. 선종宣宗 황제는 홍변과 그 문하생들에게 직위와 존호를 하사하는 중서에서 아래와 같이 치하하며 어김없이 이를 언급했다. “홍변은 사주의 … 법사法師들 …, 오진悟眞과 그 일행을 밀사로 조정에 보냈다. 짐이 듣건대 이들은 그 선조들이 중국 태생이었으나 변발한 족속들에게 정복당한 탓에 야만족의 땅에서 출생한 후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교에 귀의했고 공왕空王의 법을 이용해 이방의 종족을 개심改心케 할 수 있음을 보였으니, 야만족의 난폭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도려내어 충절을 불어넣었다… 때로 야만족들이 우리 천궁天宮에 머리를 조아리곤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때로 야만족들이 황궁에 사절을 보내곤 하는 것은 그들이 문득 미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사문들의 마음 씀이 치하할만하다… 이들의 충직하고 의로운 행실에 응분의 보상을 내림이 마땅하다⁵⁸⁾…” 아울러 홍변에게 쓴 친서에서 황제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사, 그대는 중국의 훌륭한 자식이자 서역 강토의 율의律儀요 멀리서나마 계속 그대의 고국을 아끼고 서역 강토에 황제의 세勢가 이르길 빌어주시오. 그대는 당唐에 충심을 가진 자들을 이끌어야 하오… 짐이 장의조에게 칙서를 내린 바 있으니, 거기 적힌 결정들에 대해서라면 그대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소…⁵⁹⁾”

no. 2862에 「大蕃沙州釋門教法和尚洪晉修功德記」라는 제목으로 편집 수록되었지만, 실은 이 제목으로 대정본本 속에 삽입된 바이슈라와나 관련 텍스트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두 량기란 이름은 내가 런던에서 열람했던 필사본 원본에서 아주 뚜렷하게 읽어낼 수 있다.

57) Stein, *Serindia*, III, 1333 중 샤반Chavannes의 언급.

58) 이들은 자색紫色 가사^{kāśāya}를 받는다. 자색 가사는 7세기 말에 대덕고승들을 위해 만들어진 식별의 표시였다. 오진悟眞은 그에 더해 경성임단대덕京城臨壇大德이란 직함을, 홍변은 경성내외임단공봉대덕京城內外臨壇供奉大德이란 직함까지 받는다. 이 직함들에 대해서는 본서 236, n. 1을 참조하라.

59) 이 두 칙서 혹은 성지聖旨들(그 중 첫 번째 것은 851년 6월 23일의 것이다.)은 둔황 장경동藏經洞의 한 석비에 새겨져 있다.(Pelliot, B. E. F. E. O., VIII, 503) 샤반이 이를 번역해 발표(Serindia, III, 1331~1333과 IV, 권말)했었고 나는 이 번역을 약간 줄이고 수정해 재

여기서 황제가 홍변과 연계시킨-홍변은 이렇게 “외교적 행보에 엮이게”⁶⁰⁾ 된다.- 둔황의 해방자 장의조 자신도, 그의 나머지 가족들처럼⁶¹⁾ 불교도였다. 장의조는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 관해 한 사문이 쓴 해설서를 863년 황제에게 선물하기도 한다.⁶²⁾ 그는 오진 화상을 참모이자 보좌관으로 기용했고, 오진은 전장에서 장의조를 수행하며 그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⁶³⁾ 둔황의 또 한 명의 승통으로 유가儒家의 박사이기도 했던 혜완慧莞⁶⁴⁾은 홍변과 같은 시대

수록한다. 라진옥의 『西陲石刻』, 26a 이하도 참조할 것. 펠리오 장서 3720번 필사본에는 고신告身(“임명장”)이라는 제하에 851년의 칙서가 전재되어 있고, 856년과 862년으로 표기된, 역시 고신이란 제목의 그 비슷한 내용이 담긴 다른 두 편의 중서도 덧붙여져 있다. 이 중 856년의 중서는 이미 “칙경성임단대녀 겸 사주석문의학 도법사 사자승勅京城臨壇大德兼沙州釋門義學都法師賜紫僧○…”이란 직함이 있던 둔황의 한 승려에게, “사주도승록沙州都僧錄”이란 직함을 추가로 수여한다. 이 직함들의 혜택은 열거되지 않았지만, 862년의 고신으로 이전 직함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서부승통河西副僧統”的 직함을 받은 오진(본서 236, n. 1)과 분명 같았을 것이다. 당시의 승통은 851년의 칙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닌 홍변이었다. 856년의 중서는 특히 직함을 받은 자(오진)가 “자비의 힘을 널리 펼쳤고 교학을 깊이 깨쳐 서토 사람들을 강복케 하고 [선Dhyāna]의 남쪽 종파의 요체를 전했다.” (善開慈力, 深入敎門, 降伏西土之人, 付囑南宗之要)고 언급한다. 이 필사본(펠리오 장서, 3720번)은 당시 사주 자사인 장의조의 조카 장회심張淮深이 쓴, 오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짧막한 부고로 끝난다. (869년에 돌연 오진이 죽는다.) 장회심은 오진을 이렇게 칭송한다. “그 거동과 능란한 말로, 마치 바다와 같은 장대한 용변 덕택에, [하서의] 야만족들을 설복시키고 이끌었다.”(動蹟微言, 勸導戎夷, 寔憑海辯)

60) Chavannes, 같은 책, 1333.

61) 본서 235 참조. 장의조의 사위 이명진李明振은 불교 사원에 여러 차례 보시를 했다. 그의 숙부 묘변妙弁은 화상이었고, 그의 아내와 여식은 노년에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Chavannes, *Dix inscriptions*..; 91~92)

62) 『宋高僧傳』, 『대정신수대장경』, no. 2061, 제6권, 743b, 1. Chavannes, *Serindia*, III, 1333 참조.

63) 特蒙前河西節度故太保隨軍駕使, 長[常?]爲耳目, 修表題書. 오진과 관련된 필사본 단편들의 도입부. 펠리오 필사본 3720번.

64) 燉煌管內釋門都監察僧正兼州學博士僧慧莞. 당대唐代에는 705년부터 비구와 비구니, 불교 식 서품을 따려는 지원자들을 위한 고시가 수시로 열렸다. 이 고시들은 항상 불교 전적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고시들에 관한 사료에서 발견되는 경경이란 문자는 어쨌든 그렇게 이해

에 같은 이유로 역시 똑같은 존호⁶⁵⁾를 받았다. 당대의 위대한 문사 중 한 명인 두목杜牧이 작성한 황제의 칙서에 혜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우리 위대한 요새 둔황이 야만인들의 공격에 힘들어진 지 오래, 그곳 백성들의 기풍과 습속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허나 이 지역은 명승들을 낳기도 했으니 [혜완은] (중국의) 서토에서 태어난 자로, 온 마음으로 부처를 섬기면서 남은 힘을 유학을 깨치는 데 쓴다. 그는 한편으론 미망에 사로잡히고 현세의 먼지로 더럽혀진 육신이 불타는 집과 같음을 깨달았다. 다른 한편으론 (유학이 권면한) 군신과 부자간의 도리들을 내세우고 이를 문하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불佛)법의 문을 열면서 사납고 난폭한 자(티벳인)들이 공空을 애호하고 살생을 싫어하도록 만든다. (유가의 윤리에서 충신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⁶⁶⁾를 드러내니, 의롭고 용감한 자(애국적 중국인)들이 가문의 이익에

해야 할 것 같다.) 724년의 한 칙령(본서 113, n. 1)에 따르면 시험은 대사원들에서 주무 관청의 감독 하에, 여러 사원들의 담당 승려들도 참관한 가운데 치러졌다. 문종文宗 황제 (827~835)의 한 칙령은 지방 관리들에게 이 고시들을 시행하라 명하고 있었다.(『당대조령집』, 제113권, 11a~b) 따라서 이 시기에 주州의 학당에서 고시들이 치러졌을 수 있다. 757년에, 안록산의 난에 이어 재정이 완전 파탄나자 숙종肅宗은 100(또는 500) 페이지의 (불교) 서책들을 암송할 줄 안다면 재가불교신자들(白衣)일지라도 각자 읽은 서책에 통달한 자로서 누구나 그 자신을 승려로 임명해도 된다고 승인했다.(賜明經出身爲僧. 『불조통기』, 『대정신수대장경』, no. 2035, 제39권, 376a, 제51권, 452c. 명경明經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유교 고전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을 상대로 쓰는 용어다.) 그렇게 승려가 된 자들은 어떤 직책에 지원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出身) 사실 이 조치는 무엇보다 도첩度牒에 매긴 세금의 징수를 노린 것이었다. 나는 불교도이면서 박사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들어본 바 없다. 그런데 혜완에 관한 이 칙서는 이 인물이 불교에도 유교에도 모두 정통했다고 명시한다.

65) 臨壇大德.

66) 三道. 일반적으로 효자의 세 가지 도리를 이르는 말. 생전에 부모를 봉양하는 일, 부모의 사후 장례를 준수하는 일, 장례 후 제사를 받드는 일을 말한다.(『예기』, Couvreur 옮김, II, 320) 또는 제사의 세 가지 형식인 현주獻酒, 가歌, 무舞다.(같은 책, 328) 하지만 여기서 삼도는 오히려, 한漢나라 조조量錯가 기원전 165년 한 시험에 응시했을 때 문제文帝가 논술 주제를 제시하면서 부여했던 의미에서 이해될 만하다. “나라 전체의 이익을 훤히 알고, 사람 일의 시작과 끝에 두루 통하며, 군주에게 직언할 수 있는 것, … 이런 것들이야말로

연연함 없이 나라에 헌신하게 한다. … 그는 불교와 유교로 이 나라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그 두 종교를 전파하기에 힘쓴다.”⁶⁷⁾

외부 침략자들에 맞서 늘 중국의 방어벽 구실을 해온 문명에 의한, 야만인들의 “회심” 혹은 “변모”(化) 과정을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예증이 있을까? 둔황이라면 불교 성직자들이야말로 문명의 대리자였다. 티벳에서 귀향한 우리의 둔황 화상 마하연까지도 고향의 정무政務에 관여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둔황의 중국인 통치자가 쓴 것으로, 런던에 보관된 한 꾸러미의 필사본 조각들이 있다. 그 안에 틀림없는 마하연 관련 언급들이 있어 여기서 이 문서를 분석한다.⁶⁸⁾

짐을 무엇보다 기쁘게 하는 세 가지 도리다.”(明於國家之大體, 通於人事之終始, 及能直言極諫者, … 當此三道, 朕甚嘉之. 『漢書』, 제49권, 7b) 알다시피 조조는 그 아비가 가문에 미칠 화를 염려해 아들의 태도를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 군주들에 대한 강경책을 한 나라 왕가에 간언한 뒷에 기원전 155년에 처형당했다. 봉건 군주들은 당시까지 아직 부실했던 황권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조조의 아비가 아들에게 했던 말은 이러했다. “자네는 유劉씨 가문(한漢나라 왕가)이 공고해지길 바라네만,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 조씨 가문의 멸문일세!” 고로 조조는, 혜왕에 관한 칙서의 말을 빌리면, “가문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일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귀감이다.

67) 燉煌大蕃久陷戎壘, 氣俗自異, 果產名僧. 彼土人者, 生於西土. 利根事佛, 餘力通儒. 悟執迷塵俗之身, 譬喻火宅. 舉君臣父子之義, 敎爾青襟. 開張法門, 顯白三道, 遂使悍戾者好空惡殺, 義勇者徇國忘家 … 勉弘兩敎, 用化新邦 … 두목杜牧이 작성한 칙서로, 그의 저작집 『번천문집樊川文集』(『사부총간』본, 제20권, 12a)에 들어 있다. 두목이 852년에 사망하고 둔황 탈환이 850~851년의 일이니, 이 칙서는 홍변과 관계된 칙서와 마찬가지로 851년의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 나오는 혜원慧寬은 『화엄경Avatamisaka의 주석자이자 해설자로 법장法藏(643~712)의 제자였으며 따라서 8세기 초 무렵의 인물인 혜원慧宛(『宋高僧傳』, 『대정신수대장경』, no. 2061, 제6권, 739a)과 무관하다. (라진옥은 『雪堂叢刻』 중 『張義潮傳』, 3b에서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이는 실수다.)

68) 영국 박물관, 슈타인 필사본 1438. 15×256cm 크기의 누런색 종이에 필사돼 있다. 서두는 없는 채로 한 편지의 말미에서부터 시작한다.[본서 「보유」, 365 참조] 이 필사본 조각들 전부, 서명자의 이름과 발송일자들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194, n. 1 참조) 서한문書翰文들의 서두에 중국 풍습에 따른 계절상의 기원들이 있어 이 서한들이 작성된 계절이나 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